

전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지부 운영규정

2002년 10월 01일 제정

2006년 11월 10일 개정

2007년 10월 30일 개정

2011년 09월 21일 개정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지부는 전 조합원의 굳은 단결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보호하며 대학행정의 자주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학 구성원으로서 대학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굴하지 않고 과감히 극복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9조에 의거 지부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전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칭하며, 약칭 “배재노조”라 하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Pai Chai Univ. Workers' Union, “P.C.W.U”라 한다.

제3조(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배재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대학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의 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지부 문제에 해당되는 긴급한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관한 사항
3.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 협의
4. 지부 조합원의 고충 처리
5.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 2 장 조 직

제7조(구성) 지부의 구성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배재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노동자로서 본 규정 제8조, 제9조에 의거 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신입 직원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가입 대상으로 한다.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 탈퇴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④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당연히 지부에 소속되며, 조합 탈퇴와 동시에 지부에서도 탈퇴된다.

제9조(탈퇴자의 재가입) 탈퇴자가 조합에 재가입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 ① 각종 회의에 참가권, 발언권 및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결권
- ② 조합 및 지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③ 조합 및 지부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④ 조합 및 지부 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 ⑤ 각종 회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대해 공개, 열람, 설명을 요구할 권리
- ⑥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제11조(의무)지부 소속 조합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 ① 지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
- ②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 ③ 지부활동 중에 취득한 비밀을 지킬 의무
- ④ 지부의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비 및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2조(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공무를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써 신분 보장 및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사망하였을 경우
- ② 탈퇴원을 제출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 ③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 ④ 대학에서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 경우. 단,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이 확정 판결될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4조(기구)지부에는 다음 각 항의 기구를 둔다.

- ① 총회
- ② 운영위원회
- ③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회

제15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6조(소집) 총회는 지부장이 본 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준수하고 회의장소, 일시,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한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부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본 항 제1호의 경우 7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총회의 소집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기총회 : 개최일 7일 이전
 2. 임시총회 : 개최일 1일 이전
- ④ 성원미달로 총회가 성립되지 못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부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부장 선출 및 임원의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수립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지부 운영 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지부의 해산 및 분할, 병합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지부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10.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본 조 제①항 제2호, 제6호, 제8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단, 지부의 총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된 수입사항

② 지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③ 지부 운영 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⑤ 상벌에 관한 사항

⑥ 각종 규정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⑦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⑧ 각종 위원회 위원 선발 및 파견에 관한 사항

⑨ 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위임한 사항

⑩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중요 의결사항

제 3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지부장이 선출된 후 7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지부장이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선거관련 일체의 공고

② 입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③ 투표 및 개표의 관리

④ 당락 판정 및 당선 확인과 발표

⑤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선거관리규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회의

제23조(성립 및 의결)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특별 의결)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 ② 조직형태변경(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 ③ 긴급동의(緊急動議) 성립에 관한 사항
- ④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 1 절 임원

제25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지부장 1명
- ② 수석부지부장 1명
- ③ 부지부장 2명
- ④ 사무국장 1명
- ⑤ 회계감사 2명

제26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각 국의 국장 및 지부의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5.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 요청
 6. 각종 규정의 임시해석권을 갖으며, 조합중앙위원회에서 반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7.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위원을 위촉한다.
 8.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수석부지부장
 - 2) 부지부장(연장자순)
 - 3) 사무국장
 - 4)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 수석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리한다.
2. 각 국의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갖는다.
3. 지부의 대변인이 된다.

③ 부지부장

1.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지부장을 대리한다.
2. 각 국의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갖는다.

④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지부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의 관리 책임을 맡는다.
3. 각 국의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갖는다.
4. 회계감사에 응하며, 그 책임을 맡는다.
5.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작성, 업무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⑤ 회계감사

1. 회계감사 위원은 매회계년도 결산 시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27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지부장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 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거수투표 결과 다 득표자 2명을 지명 선출한다.

④ 기타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보선) 지부의 선출직 임원 유고시 지체 없이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유고된 선출직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0조(탄핵) 지부 임원의 탄핵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2/3 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부는 탄핵소추 또는 탄핵의결 즉시 지역본부, 조합에 보고하여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 절 부서

제31조(부서) 지부에 다음 각 항의 국을 두며, 각국에는 국장을 둔다.

- ① 조직국
- ② 기획국
- ③ 교육국
- ④ 후생복지국
- ⑤ 대학발전지원국
- ⑥ 편집국

제32조(임무)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직국
 1. 조직 확대 및 강화에 대한 기획활동에 관한 사항
 2. 조직 행사 및 각종 회의 시 동원에 관한 사항
 3. 조직 상황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대내·외 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5. 노동쟁의의 발생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6. 기타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 ② 기획국
 1. 지부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동관련 조사통계 및 법제에 관한 사항
 3. 임금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영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의식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국
 1.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 ④ 후생복지국
 1.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업무, 문화 소모임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⑤ 대학발전지원국
 - 1. 대학 내·외 발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 2. 기타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 ⑥ 편집국
 - 1. 지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2. 지부의 사료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 3. 기타 자료집 발간에 관한 사항

제 6 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조합의 위임에 의해 교섭을 진행한다.

제34조(체결) 조합으로부터 지부가 체결권을 수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35조(단체교섭 안) 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36조(단체교섭 단 구성) 지부 단체교섭 단 구성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37조(조정신청) 지부의 조정신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와 조합에 보고한 후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한다.

제38조(노동쟁의) 지부는 본 규정의 목적 및 활동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39조(쟁의행위) 지부의 쟁의행위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의 승인을 거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0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 제61조, 제62조를 준용한다.

제 7 장 재정 회계

제41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 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등으로 한다.

제42조(조합비) 지부의 조합비는 급여(기본급+업무개발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급량비 및 교통비를 포함한 총액의 1%로 하며, 비율의 조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43조(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결산)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을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46조(포상 및 징계) 조합원을 포상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장(포상 및 징계)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임기적용) 본 규정 제28조 변경된 임기의 적용은 제15대 임원 임기 시작일(2008. 9. 1) 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임기적용) 본 규정 제28조 변경된 임기의 적용은 제16대 임원 임기 시작일(2011. 9. 1) 부터로 한다.

선거관리시행세칙

2004년 08월 30일 제정

2011년 09월 0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선거관리 시행세칙(이하 “ 본 세칙”이라 한다.)은 전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 지부(이하 “본 지부”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본 지부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세칙의 적용범위는 본 지부의 지부장 및 일부 임원 선거로 한다.

제 3 조 (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본 지부 조합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선거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권 및 입후보자

제 4 조 (선거권) 본 지부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을 갖는다.

제 5 조 (입후보자격) 본 지부 조합원으로 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목적) 본 지부 선거의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 7 조 (구성 및 임기)

1. 선관위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선관위가 구성되어 차기 직접 선출되는 지부장 및 임원 선거전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 8 조 (임무) 선관위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일정에 관한 공고
2. 입후보 등록 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4. 선거일정, 유세 관리

5. 투·개표 관리
6. 이의 신청 및 제소에 관한 심의
7. 당선인 확정 공고
8. 기타 관련 제반 회무의 운영

제 9 조 (권한)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사안의 의결권을 가지며 선관위 재적위원 2/3이상(3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선거운동과 유세중의 질서유지 및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
2. 선거기간 중 이의 신청 및 제소에 관한 심의
3. 선거의 무효 및 재투표 결정

제 10 조 (선거일 공고) 선관위는 선거 15일전에 공고한다.

제 11 조 (선거인명부 작성) 선관위는 선거 7일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 12 조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인에 대한 선거인명부 열람은 기표 전에 한다.

제 4 장 후보자 등록

제 13 조 (입후보) 입후보자는 아래와 같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한다.

1. 전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 지부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양식1)
2. 전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 지부장 입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양식2)
3. 선거공약 1부

제 14 조 (후보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가 직접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 15 조 (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 16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선관위 위원
2. 현재 집행부 전원

제 17 조 (공동 소견발표) 선관위는 후보등록 확정 후 총회 시 입후보자에 대한 소견발표회를 개최한다.

제 18 조 (선거운동 제한) 입후보자는 아래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일체의 향응 및 금품 제공

2. 타 후보에 대한 일체의 비방 및 유언비어 날조,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배포
3. 기타 선거 분위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 6 장 투 표

제 19 조 (투표방법)

1. 본 세칙에 정한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투표용지 및 각종 양식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3. 선거인은 투표 시 선거인명부에 도장 또는 서명으로 날인한 후 투표한다.

제 7 장 개 표

제 20조 (개표)

1. 개표는 선관위 위원 입회하에 개표한다.
2. 선관위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을 개봉한다.

제 21 조 (부정투표 및 무효투표)

1. 무효투표
 - 가. 2개 이상을 각 기표란에 표시한 경우
 - 나. 기표란 중앙 구분선에 접한 기표
 - 다. 기표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2. 유효표
 - 가. 전항의 무효표 외에 후보자의 이름, 기호에 찍은 경우에 유효표라 한다.
 - 나. 한 기표란에 두 번 이상 표시한 경우
 - 다. 기표가 희미하지만 투표인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

제 22 조 (개표중지) 선관위원장은 개표장소가 소란하거나 개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표를 중단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의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공고 후 24시간이내에 선관위에 후보날인 한 문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8 장 당선확정

제 24 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1. 과반수이상 조합원 참석,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과반수이상 득표자 없을 경우 다 득표자 순 2명에 대해 2차 투표한다.
3.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 없을 경우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당선자 공고는 당선자 확정 후 24시간 이내에 한다.

제 9 장 별 칙

제 25 조 (후보등록 취소) 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한다.

1.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본 세칙을 위반한 부당한 선거운동을 한 자.
3. 본 세칙을 위반한 일체의 행동을 한 자.
4.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후보

제 26 조 (경고) 선관위는 후보 등록 및 운동원의 선거운동에 있어 경미한 규칙위반이라도 발생할 경우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가할 수 있고, 3회의 경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후보자는 등록이 취소된다.

제 27 조 (선관위 의결권) 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 28 조 (관례준용)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부 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세칙은 2004년 8월 30일 제정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세칙은 2011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